

의안번호	2205434
의 퇴 인	정성호 의원
회 답 일	2024. 12. 5.
추계번호	24F4944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전기·수소택시에 대한 취득세 전액 감면 규정 신설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전기·수소택시에 대한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액 감면할 경우 취득세는 2025년 772억원, 2027년 772억원으로 2025~2027년까지 3년간 총 2,317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취득세, 2025~2027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누적	연평균
전기·수소택시에 대한 취득세 100% 감면(안 제70조 제5항)	-772	-772	-772	-2,317	-772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0조 제5항 (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)	- 전기·수소택시 취득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전액 면제 규정 신설 - (현행) 취득세 50% 감면 → (개정안) 취득세 100% 감면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70조 제5항 (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제하며, 세수 효과는 2025년부터 발생
-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신규등록 전기·수소택시 건수 및 연료별 승용차 평균 공급가액을 참고하여 향후 전기·수소택시 신규 취득대수 및 평균 공급가액을 전망하고,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
 - 전기택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증가하는 추세이나 2022년 대비 2023년 신규등록 건수가 감소(△20.4%)한 점을 고려하여 최근 3년(2021~2023년)간 신규등록 건수의 평균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 - 최근 3년간 평균 신규등록 건수: 11,103건
 - 수소택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증감추이가 불규칙하므로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신규등록 건수의 평균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 - 최근 5년간 평균 신규등록 건수: 12건
 - 2023년 연료별 승용차의 평균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향후 전기·수소택시 공급가액을 추정함
 - 2023년 승용차 평균 공급가액: (전기차) 3,474만원 (수소차) 3,403만원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제도 개요

- 현행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버스운송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의 50%가 감면됨(제70조제1항)
 - 이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전액이 면제됨(제70조제4항)
 - 그러나 택시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¹⁾
 - (취득세율) 영업용 자동차: 4%

나. 추계방법

- (자동차 유형별 신규등록 실적)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료유형별 택시 신규등록 건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
 - 전기택시는 2019년 1,029건에서 2023년 12,552건으로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임
 - 수소택시는 2019년 2건에서 2023년 7건으로 연도별 증감추이가 불규칙함

[표 2] 전기·수소택시 신규등록 건수: 2019-2023년

(단위: 건, %)

	2019	2020	2021	2022	2023
전기택시	1,029	903	4,994	15,762	12,552
수소택시	2	5	13	34	7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

1) 현행법 제66조제4항에서 전기·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, 이는 비영업용 차량에만 적용되는 것임

□ (자동차 유형별 신규 등록건수 전망) 다음과 같은 가정에 따라 2027년까지 전기택시 및 수소택시의 신규등록 건수를 전망함

- 전기택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증가하는 추세이나 2022년 대비 2023년 신규등록 건수가 감소(△20.4%)한 점을 고려하여 최근 3년(2021~2023년)간 신규등록 건수의 평균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 - 최근 3년간 평균 신규등록 건수: 11,103건
- 수소택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증감추이가 불규칙하므로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신규등록 건수의 평균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 - 최근 5년간 평균 신규등록 건수: 12건

[표 3] 전기택시·수소택시 자동차 신규취득 대수 전망: 2025-2027년

(단위: 대)

	2025	2026	2027
전기택시	11,103	11,103	11,103
수소택시	12	12	1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전기·수소택시 신규 공급가액) 2025~2027년 신규등록된 전기택시·수소택시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

- 2023년 연료별 승용차의 평균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함

[표 4] 연료별 승용차 평균 공급가액

(단위: 만원)

연료	전기	수소전기
평균 공급가액	3,474	3,403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

□ (개정안에 따른 감면액 규모 추정) 전기·수소택시에 대한 취득세 전액 감면 규정이 도입될 경우 예상되는 취득세 감면 규모는 다음과 같음

[표 5] 차량 1대당 감면액 규모 추정: 2025~2027년

(단위: 만원)

		2025	2026	2027
전기택시	평균 공급가액(A)	3,474	3,474	3,474
	취득세율(B)	4%	4%	4%
	감면액 (A×B)	139	139	139
수소택시	평균 공급가액(A)	3,403	3,403	3,403
	취득세율(B)	4%	4%	4%
	감면액 (A×B)	136	136	13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세수효과) 앞서 전망한 전기·수소택시 취득세 전액 감면시 감면규모에서 현행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모를 제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

- 현행법에 따른 경우 전기·수소택시 신규 취득시 취득세의 50%가 감면되나, 개정안에 따른 경우 감면율이 100%로 인상됨

[표 6] 세수효과 추정: 2025~2027년

(단위: 만원)

		2025	2026	2027
전기택시	개정안(100% 감면, A)	139	139	139
	현행(50% 감면, B)	69.5	69.5	69.5
	차이 (C=A-B)	69.5	69.5	69.5
	등록대수(D)	11,103	11,103	11,103
	세수효과 (C×D)	771,659	771,659	771,659
수소택시	개정안(100% 감면, A)	136	136	136
	현행(50% 감면, B)	68	68	68
	차이 (C=A-B)	68	68	68
	등록대수(D)	12	12	12
	세수효과 (C×D)	816	816	81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전기·수소택시에 대한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액 감면할 경우 취득세는 2025년 772억원, 2027년 772억원으로 2025~2027년까지 3년간 총 2,317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취득세, 2025~2027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누적	연평균
전기·수소택시에 대한 취득세 100% 감면(안 제70조 제5항)	-772	-772	-772	-2,317	-772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장설희	백경엽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836	shjang@assembly.go.kr